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063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등	5
2.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규정 정비	20
3.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3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4. 6. 27.
3. 회 부 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 하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뿐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배당받게 되는 체계상의 문제 점을 해소하며, 회사가 주식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 정비(안 제335조의6제4항, 안 제360조의24제10항·제360조의25

제6항 신설)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회사나 지배주주는 매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그 가액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하도록 함.

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의 명확화(안 제363조제1항)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주주 동의 방식을 구체화함.

다.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안 제364조의2, 제368조의5 및 제368조의6 신설)

1) 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 또는 주주가 소집지에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출석할 수 있는 병행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 운영과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하자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안 제368조제2항, 안 제368조제4항 신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마.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안 제368조의3제1항 및 제368조의4제1항)

종전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 정비(안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374조의2제6항 신설)

1) 회사의 영업양도나 양수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해당 영업양도나 양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주주총회 소집 시 명시한 매수가액을 전부 지급하여야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회사는 매수가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명시한 매

수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안 제530조의12)

회사의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
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등

- 개정안은 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안 제363조), ②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며(안 제364조의2, 제368조의5 및 제368조의6 신설 등), ③ 의결권 대리행사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주주총회일 전까지 하도록 하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한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8조, 제368조의3 및 제368조의4).

현행	개정안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u>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u>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u> . ----- <u>서면으로 발송한 통지가</u> -----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
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
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
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
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
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
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
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
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
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
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地 또
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제
522조의3, 제530조의11 또는 제53
0조의12-----
-----.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
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
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

<신 설>

회를 개최한다.

제364조의2(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주주총회) ① 회사는 제3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제364조제2항의 방식과 제1호의 방식을 모두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1.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가 그 선택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할 수 있는 방식

2.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만 출석할 수 있는 방식

②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개최된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자통

第368條(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權의 행사) ① (생략)

② 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그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第368條의3(書面에 의한 議決權의 행사) ① 株主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總會에 出席하지 아니하고 書面에 의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신수단,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의 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
명하는 서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68조의3제1항 또는 제368조
의4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이사회
의결로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주주
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
결권의 행사) ① -----

----- 주주

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신설>

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68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제3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결권 행사 또는 의사 진행 등 결의방법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76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의방법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

<신 설>

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6항에 따라 비치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⑧ 주주의 질의 방법·절차 및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8조의6(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의결권의 행사 등) ① 회사가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② 주주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第372條(總會의 延期, 續行의 決議) ①總會에서는 會議의 續行 또는 延期의 決議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第363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주주의 대리인이 병행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개최된 전자주주총회에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2조(총회의 속행 및 연기 등)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속행된 총회 또는 연기된 총회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와 다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나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③ 주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속행되거나 연기되는 경우 제363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 출석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속행된 총회 또는 연기된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제3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73條(總會의 議事錄) ① (생략) ② 議事錄에는 議事の 經過要領과 그 結果를 記載하고 議長과 出席한 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사록에는 총회의 개최방식 및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 개정안은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한편, 소집통지, 의결권 행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주총회 전반을 전자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방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개최, 의결권 행사 등 주주총회 전반을 전자화함으로써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 극복 및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전자문서를 통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주주의 동의방식에 대한 위임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전자문서를 통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동의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¹⁾을 고려할 때 위임

1)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 마련을 통하여 동의방식의 구체화 및 주주의 예측가능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주주총회결의는 취소²⁾ 또는 부존재³⁾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관련하여,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및 의결권 행사방식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①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범위 및 운영방식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②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③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해석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⁴⁾

2)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380조(결의무효 및 불존재확인)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불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은 ① 물리적 공간에서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와 ② 현장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고 전자주주총회만을 개최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구분됨.⁵⁾

○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3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가 동시에 여러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2017년 12월에 새도우 보팅 제도가 폐지⁶⁾된 이후로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⁷⁾ 확보 또한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

-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의 2023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정기총회 개최가 가장 많았던 상위 3일의 개최비율은 54.03%로, 전년 54.25%과 유사하지만 3월

4) 현행법상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소집지에 관한 제364조에서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주총회가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임(서지원,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입법동향 및 사례 연구 -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일본의 입법동향과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문집 제46집제1호(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p.167).

5) 개정안에서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병행전자주주총회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완전전자주주총회로 표현하고 있음.

6) 소액주주들의 불출석으로 인한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불성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것으로 의제하던 제도로, 주주권 훼손과 의결권 행사의 왜곡 등 논란이 지속되어 2013년에 폐지가 결정되고 2017년 12월에 4년의 유예기간 종료

7)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마지막 주차의 개최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21년 44.24%→'22년 62.94%→'23년 72.65%), 그 외의 주차별 개최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⁸⁾

- 참고로, 12월 결산 상장회사 총 2,267개사(유가증권시장 780개사, 코스닥시장 1,487개사) 중 비대면(온라인) 형태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는 34개사(유가증권시장 29개사, 코스닥시장 5개사)로, 작년 28개사 대비 증가하였고, 34개사 모두 참가형·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현장주주총회의 개최와 병행하되, 총회의 의사진행 실황을 중계하는 형태로서 주주의 출석 및 실시 간의결권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태)를 개최함.⁹⁾

□ 다만,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주주권 침해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도입 여부 및 개최요건 등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들이 소외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인하여 현장주주총회에 비해 경영진과 주주 간 또는 주주 상호 간의 소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의장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8) 2023. 4. 26.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보도자료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 2023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 참고

-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가장 많았던 상위 3일은 ① 3월 5주 수요일(510개사), ② 3월 5주 금요일(408개사), ③ 3월 5주 목요일(307개사) 順임.

9) 2023. 4. 26.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앞의 보도자료 참고

- 소통 제한이라는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회사가 설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주들이 경영진이 설정한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¹⁰⁾
 - 로그인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전자텍스트로 제출된 질문 중 취사선택할 수 있어 경영진이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의결권 대립을 벌이는 주주의 발언기회를 제한하거나 경영진에 불리한 주주의 질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경영진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질문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할 때 추가적 질문 등을 통한 주주의 토론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온라인 회의의 특성상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움.
-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을 설정할 때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Opt-out방식과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둔 경우에만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Opt-in방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¹¹⁾,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10) 이승희,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안 검토 - 현장대체형 전자주총의 주주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2022, p.3~5

11) 미국의 경우 주법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고(Opt-out 방식: 아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등, Opt-in방식: 하와이주, 인디애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일본의 경우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 회사법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정관의 근거를 따로 요구하지 않으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가 주주의 이익

행사를 현장주주총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운영 등과 관련 기본사항 범위(소수주주권 인정 여부, 본인확인 등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절차, 주주총회 과정의 영상 전송 여부, 질의의 방법·공유 등 의사진행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을 불문하고 정관의 규정을 둔 경우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안 제364조의2제1항), 회사는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안 제368조의5제1항)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주주의 질의 방법·절차 및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주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안 제364조의2제4항, 제368조의5제8항 및 제368조의6제2항).

□ 마지막으로,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①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증명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전자투표)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면투표)의

확보를 배려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경제산업성령·법무성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경제산업성 및 법무대신의 확인을 얻은 후에 장소의 정함이 없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이러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김효정, 전자주주총회의 상법 도입시 그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36권제3호, 2023년 9월, p.107~109).

경우에도 전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도록 하여¹²⁾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며, ③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에서는 대리권 증명을 위하여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³⁾,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증명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는 모두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가 유사함.
- 서면투표·전자투표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운영에 관한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될 경우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가 모두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12)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3)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에서 두 제도가 함께 운영됨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실무상 혼란이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서면투표·전자투표 시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안 제368조제4항)과 관련하여, 서면투표·전자투표는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¹⁴⁾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09년 전자투표 규정이 신설될 당시 「상법 시행령」에서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 1. 29.
개정을 통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한 바 있음.

14) 2024. 5. 21. 법무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해당 개정안의 입법효과로 ‘출석주주수 및 투표수 산정에 관한 기업의 부담 경감’을 들고 있음.

2.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규정 정비

- 개정안은 ① 주식교환, 영업양도, 합병 등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에 대하여 주식매수가액 및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 ② 매수가액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이 청구된 경우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매수가액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35조의6제4항, 제360조의24제10항, 제360조의25제6항, 제374조의2제4항 등), ③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해당 영업양도, 합병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주주총회 소집 시 명시한 매수가액을 전부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해당 영업양도, 합병 등의 효력발생일에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4조의2제2항, 제522조의3제3항 등).¹⁵⁾

현행	개정안
第335條의6(株式의 買受請求)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은 第335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① 회사는 제335조의2제4항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

하여 株主가 會社에 대하여 株式의 買受를 請求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 ⑨ (생략)
<신 설>

수를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주식 매수에 관하여는 제335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주주가 주장하는 매수가액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배주주는 제8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제4항에 따른 매매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

<신 설>

<신 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 ⑤ (생략)

<신 설>

第374條(營業讓渡, 讓受, 賃貸等) ① (생략)

②第1項의 행위에 관한 株主總會의 召集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第374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請求權의 내

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⑪ 지배주주는 제4항제3호의 자료를 주주총회일 2주일 전부터 2개월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⑫ 소수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1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배주주는 제4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소수주주가 주장하는 매매가액 중 일부를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및 임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주주총회일 2주일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주주(이하 이 조에서 “반대주주”라 한다)에게 제374조제2항에 따라 명시한 매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명시가액”이라 한다) 전부를 지급(반대주주가 해당 매수가액을 수령하지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買受價額은 株主와 會社間의 協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가 효력발생일까지 명시가액의 전부를 반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반대주주는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이 명시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 및 차액에 대한 효력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반대주주 또는 회사는 회사가 효력발생일까지 명시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 및 이에 대한 효력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명시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 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u>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u>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u>따라</u> ----- ----- ----- -----. ⑥ 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의 <u>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민</u> <u>법」 제4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u> <u>회사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u>
---	---

□ 개정안은 주식매수·매도청구권과 관련하여 주식매수가액 및 산정
근거의 통지와 매수가액 산정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 규정을 마련
하고, 법원의 주식매매가액 결정 전 매수인의 공탁을 허용하며,
영업양도·합병 등 기업구조변경 관련 주식매수청구 시 주주 지위의
변경기준시점을 규정함으로써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회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대주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체계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 우선, 주식매수가액 및 산정 근거의 통지와 주식매매가액 산정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 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주식매수·매도청구 절차에서
주주 보호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매매가액의 결정이
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가액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

15) 본문에는 지점 등기부 폐기와 관련하여 주요조문의 신·구조문대비표만 표기하고, 전체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자료 참조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알 권리 강화,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권리 행사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 주식매수·매도청구권 관련 매매가액에 관한 정보 제공 규정으로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제360조의24제4항제3호¹⁶⁾).

□ 다음으로, 법원의 주식매매가액 결정 전 매수인의 공탁 허용과 관련하여, 다툼 없는 매매가액의 지급·공탁을 허용함으로써 주주가 투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매대금 이행 지체로 인한 매수인의 지연손해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

16)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따른 기간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이러한 법리는 이 기간 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¹⁷⁾한 바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에 지체책임이 인정됨.¹⁸⁾

□ 다만, 법원의 주식매매가액 결정 전 매수인이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부공탁의 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일부공탁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4]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2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지체책임을 인정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가액 결정에서 자신들의 희망 매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상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고,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것 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반대주주들이 위와 같은 권리를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반대주주들이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감액이나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8) 회사의 대금지급의무와 주주의 주식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회사에 지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권이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었는데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공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회사에 제출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하였을 당시 회사에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받아 갈 것을 별도로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보아 회사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바 있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¹⁹⁾

□ 마지막으로, 기업구조변경 관련 주식매수청구 시 주주 지위 변경 기준시점 규정과 관련하여, 기업구조변경행위의 효력발생일에 반대 주주의 지위를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시킴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중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체계적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확실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기업구조변경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²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를

19)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탈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고 매매대금 정산 등 채권자로서의 이해관계만 남아있는 반대주주가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받게 됨.

-
- 20)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 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3.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개정안은 물적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30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u>第530條의12(物的 分割) 이 節의 規定은 分割되는 會社가 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의 株式의 總數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u>	<u>제530조의12(물적 분할) ① 분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u> <u>② 제1항의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분할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22조의3 및 제5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4조제3항 및 제374조의2제2항을 준용하는 제522조의3제3항 후</u>

	단에 따른 “합병등기일”은 각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회사의 변경등기일”로 본다.
--	--

□ 개정안은 물적 분할을 통하여 분할회사의 핵심사업 부문이 신설 회사로 분리된 후 상장되면서 분할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그 하락의 손실을 소수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함²¹⁾에 따라 물적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물적 분할 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반대주주는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 비용을

21)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주가 변화>

(출처: 류호연·이수환,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2)

모회사	자회사	자회사 상장일	상장 당일 모회사 주가	모회사 현재 주가	주가 등락률	코스피 지수 등락률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2021.3.18.	30만 1,000원	12만 2,000원	-59.5%	-13.9%
SK이노베이션	SK아이이테크놀로지	2021.5.11.	26만 9,000원	21만 4,000원	-20.5%	-17.7%
카카오	카카오페이	2021.8.6.	14만 5,500원	8만 8,300원	-39.4%	-19.3%
	카카오뱅크	2021.11.3.	12만 4,500원		-29.1%	-11.3%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2022.1.27.	61만 원	46만 3,000원	-24.1%	0.9%

※ 주: 모회사 현재 주가는 2022.4.27. 종가 기준이며, 코스피 지수 등락률은 자회사 상장일 종가와 2022. 4. 27. 종가(2639.06)를 비교함

※ 자료: 한국거래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적 분할을 결정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물적 분할의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²²⁾

□ 주식매수청구권은 모든 주주총회결의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만 인정되는 권리로, 다음과 같은 현행법체계를 고려할 때 어떤 사항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보임.

- 현행법에서는 동일한 특별결의 사항이라도 회사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의 양도·양수·임대, 합병, 분할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합병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정관변경, 자본금감소, 해산, 분할 등에는 부여하지 않음.²³⁾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주주 보호의 필요성,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됨.

○ 물적 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에 찬성하는 논거로는 단순 물적분할의 경우 소수주주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음.

- 소수주주는 신설회사의 합병, 상장 등 중요한 경영활동에 대한

23)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의 견제권이 박탈되고, 핵심사업의 분리로 인한 주주의 수익권, 처분권이 몰취되는 등 소수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됨.

- 분할회사의 소수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지만 분할회사의 대주주는 분할회사에 대한 지배력만으로 신설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가 분할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인 앞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함.²⁴⁾

○ 물적 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구조조정,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물적 분할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로 물적 분할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음.

- 물적 분할은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당 사업부문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단임.
- 물적 분할은 미리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적절한 시기에 양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상속 등의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회사를 재조직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²⁵⁾

24) 류호연·이수환, 앞의 글, p. 6~7

문 의 처
02)6788-5055

25) 류호연·이수환, 앞의 글, p. 2~4

참고

주식매수청구권 규정 정비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35條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생략) ②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주 또는 매도청구인은 제335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도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第335條의6(株式의 買受請求)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規定은 第335條의2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株主가 會社에 대하여 株式의 買受를 請求한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① 회사는 제335조의2제4항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주식 매수에 관하여는 제335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주주가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
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
칙) ① ~ ③ (생략)

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생략)

<신설>

<신설>

주장하는 매수가액 중 일부를 주
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
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
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
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회사는 제363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360조의5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

3. (현행과 같음)

⑤ 회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주
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
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주주
총회일 2주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
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

⑤·⑥ (생략) 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② (생략) <신설>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⑨ ----- 제8항----- ----- ----- -----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주식교환의 날”로 본다.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식교환에 관하여는 제5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7조의2제3항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로 본다.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주식이전에 관하여는 제360
--	--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 ⑨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조의5,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제374조제3항·제4항 및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4조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및 제37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각각 “제360조의21에서 정한 등기일”로 본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배주주는 제8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제4항에 따른 매매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⑪ 지배주주는 제4항제3호의 자료를 주주총회일 2주일 전부터 2개월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⑫ 소수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1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 ⑤ (생략)
<신설>

第374條(營業讓渡, 讓受, 賃貸等) ① (생략)
②第1項의 행위에 관한 株主總會의 召集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第374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買受請求權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배주주는 제4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소수주주가 주장하는 매매가액 중 일부를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및 임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 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주주총회 일 2주일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신 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買受價額은 株主와 會社間의 協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주주(이하 이 조에서 “반대주주”라 한다)에게 제374조제2항에 따라 명시한 매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명시가액”이라 한다) 전부를 지급(반대주주가 해당 매수가액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가 효력발생일까지 명시가액의 전부를 반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반대주주는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이 명시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 및 차액에 대한 효력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반대주주 또는 회사는 회사가 효력발생일까지 명시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 및 이에 대한 효력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명시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

-----.

⑥ 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④ 회사는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회사는 제4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영업양도, 양수 또는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제374조의2제2항의 효력발생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② (생략)
<신설>

第527條의2(簡易合併)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매수청구에는 제3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의 매수청구에는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4조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및 제37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각각 “합병등기일”로 본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

<신 설>

第530條(準用規定) ① 削除

②第234條, 第235條, 第237條 내지 第240條, 第329條의2, 第374條 第2項,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第439條第3項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合併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④ (생략)

第530條의11(準用規定) ① (생략)

②第374條第2項, 第439條第3項, 第522條의3, 第527條의2, 第527條의3 및 第527條의5의 規定은 分割合併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4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30조(준용규정)

②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및 제43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39조 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

-----.

1. (현행과 같음)

2. 제360조의3제7항을 위반한 자	2. 제360조의3제9항-----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회	제635조(과태료) ① -----
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	-----
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	-----
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	-----
·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	-----
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	-----
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	-----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	-----
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	-----
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	-----.
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	-----
러하지 아니하다.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23. ----- 제522조의3제3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	항, 제527조의2제3항 -----
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	-----
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	-----
는 공고를 한 경우	-----

24. ~ 32. (생략)	24. ~ 3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